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11. 2.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22년 10월 21일
- 나. 제출자: 영등포구청장
- 다. 회부일자: 2022년 10월 26일
- 라. 상정일자: 제24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2022. 10. 31.)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복지국장 강현숙)

- 가. 제안이유
 - 자활기금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상위법령에 합치하도록 조례 내용을 정비하고 자치법규 정비기준을 준수하여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으로 인용조문 정비(안 제1조)
 - 자활기금 “법정의무” 사항으로 변경에 따른 존속기한 규정 삭제 (안 제2조의2)
 - 준용규정의 제명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2조)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최종란)

○ 본 조례안은

- 상위법령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으로 자활기금의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폐지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 주요 내용은

- 안 제1조에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으로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자활기금 설치 근거 조항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로 변경하였고,
- 안 제2조의2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삭제하는 것으로, 이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자립·자활의 지원을 위하여 자활기금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제1항이 개정(2019. 1. 15.)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1항¹⁾에 근거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규정이 불필요하여 이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 안 제12조에서는 준용규정의 제명이 변경(2021. 8. 26.)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하였으며,
-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하였음.

○ 본 조례안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자활기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삭제하여 자활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1)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48 호
----------	--------

제출연월일: 2022. 10. .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자활기금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상위법령에 합치하도록 조례 내용을 정비하고 자치법규 정비기준을 준수하여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으로 인용조문 정비
- 나. 자활기금 “법정의무” 사항으로 변경에 따른 존속기한 규정 삭제
- 다. 자치법규 명칭, 용어 등 표현 정비 및 현행화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 다. 협의사항
 -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없음
- 라. 입법예고(2022. 9.22. ~ 10.12./ 20일 간)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로 한다.

제2조의2를 삭제한다.

제5조제3항제2호 중 “**구의회**”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등포구에**”를 “**구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자활사업 실시기관**”을 “**자활사업실시기관**”으로 한다.

제12조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 운영 조례」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영 조례」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국민기초생활 보장법</u>」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p> <p>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② (생략) ③위원장은 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사회복지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1. (생략) 2. <u>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u></p> <p>3. (생략) ④ ~ ⑥ (생략)</p> <p>제6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p>	<p>제1조(목적) ----- 「<u>국민기초생활 보장법</u>」 제18조의7 ----- ----- ----- ----- -----.</p> <p><삭 제></p> <p>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p> <p>1. (현행과 같음) 2. <u>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u>----- 3.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p> <p>제6조(지원대상) -----</p>

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영
등포구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략)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
시기관

4.·5. (생략)

제12조(준용)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
운영 조례」 및 「서울특별시 영
등포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
한다.

구에 -----

-----.

1.·2. (현행과 같음)

3. ----- 자활사업실
시기관

4.·5. (현행과 같음)

제12조(준용)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영
조례」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
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